
지역 중심 소규모 사업장 예방점검을 위한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 계획

2026. 4.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2
III. 세부 추진계획	3
①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운영 및 자체계획 수립 ...	3
②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규모·취약 분야 감독 강화 ...	6
③ 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합동 컨설팅 내실화	8
IV. 행정 사항	9
[붙임]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	10

I. 추진 배경

- **(경과)**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22년~)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 관련 협·단체 등과 공동 홍보 +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현장 지도·점검

- **(사업 효과성)** 정식 사업장 감독 측면보다는 영세사업장의 자율 개선 지원을 위한 노무지도 및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작성·진단하고 설명회 등을 진행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제기건수 비중이 사업 시작('22년) 당시 대비 약 2%p 증가하는 등 범위반 예방 및 취약 근로자 보호라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행방식 재검토 필요

(단위: 건, %)

연도	전체 규모 사업장 신고사건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사건	전체 대비 30인 미만 비중
'25년	413,116	340,983	82.5
'24년	429,663	357,032	83.1
'23년	400,800	332,478	83.0
'22년	335,279	270,274	80.6

- **(환경 변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12.8. 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사업장 감독 시행 본격화

- 법시행에 대비하여 ①지방정부 감독 역량 제고(현장 멘토링 등) 및 ②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취약 분야 발굴 필요

(목표) ①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준수 및 ② 지방정부 현장학습 효과성 제고
(방법) 상시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 취약분야 감독 강화 및 컨설팅 실시
 ⇒ 「현장예방점검」을 중앙·지방 협력의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으로 개편

II. 추진 방향

- ❖ **(협력체계 구축)** 지방노동관서-자치단체가 함께 지역별 취약 분야 발굴 및 노동감독·산업안전 예방점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노동감독관법」 제32조)
 - 법 시행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협력 사업을 통해 지방청·대표지청과 상시적인 협의 및 지원 체계 구축
- ❖ **(현장감독 강화)** 소규모·영세 사업장 및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 강화***
 - * 노무지도 방식(완화된 조치 기준) → 법 위반 즉시 시정 등 감독 본연의 역할 강화
- ❖ **(현장밀착형 컨설팅 확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노동감독 사각지대 (업종·분야) 발굴하여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 집단 컨설팅 제공**
 -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로 예방 효과 제고

< 개편 전후 비교 >

	< 현장예방점검의 날 >	<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
협력 체계	<p>본부-지방청-지청 간 역할 분담 및 지역 협단체 위주 협력 실시</p> <p>※ '25년 4차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자치단체와 협력</p>	<p>법률에 근거하여 지방관서-자치단체 중심의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운영</p> <p>※ 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상시 협력협의 체계(거버넌스) 마련</p>
현장 감독	<p>자율개선, 노무관리 지도 등 계도 중심의 완화된 점검</p> <p>※ 감독 범위가 협소하고, 임금체불 외 범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 수준의 완화된 기준 적용</p>	<p>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사업장 감독</p> <p>※ 법 위반 적발 및 즉각적 시정 등 위반 사항 해결 역할 강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p>
컨 설 팅	<p>지방노동관서 중심의 집단컨설팅 진행</p> <p>※ 협·단체와 협력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후 설명회 등 실시</p>	<p>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분야·업종 선정 → 컨설팅 및 사후관리 실시</p> <p>※ 자치단체가 지역 취약분야 선정에 주도적 역할</p>

Ⅲ. 세부 추진과제

①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설치·운영 및 자체계획 수립

- ❖ 권역별·지역별 지방노동관서-자치단체 상설 협의체계 구축
- ❖ 협의회 논의 통해 권역별 「기초노동질서 점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목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근로기준의 통일적 적용 등 중앙-지방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 명시(제32조)
 - 본부 주관 「중앙노동감독협의회」와 별개로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상시 협의·협력 위해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필요
 - * 지방노동관서별 지방정부 협력 전담팀(노동·산안) 구성 완료(3.31.)
 - ⇒ (소)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4월) → 지역 단위 협업 방안 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자체 계획」 수립
- **(구성·운영)** 권역별 '협의회'와 그 하부에 지역별 '소협의회' 운영
 - * (소)협의회는 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 논의 등을 위해 주관 지방관서의 담당 과장 주관 하에 시·도 담당 과장(또는 팀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운영 가능
 - [협의회] 우리부 청 관할과 시·도 행정구역 불일치(1:1 매칭 불가능) → 7개 지방청 및 강원·울산지청 주관으로 9개 권역별 협의회 구성
 - * 필요시 소속 지청 포함 가능

< 권역별 협의회 구성 >

권역	협의회 구성	
	주관 지방노동관서	자치단체
서울 권역	서울청	서울특별시
경기 권역	경기청	경기도
인천 권역	중부청	인천광역시
강원 권역	강원지청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경남 권역	부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 권역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대구·경북 권역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라·제주 권역	광주청	광주광역시·전라남도(7.1 통합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충청·세종 권역	대전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구성) (의장) 주관 지방관서장, (위원) 시·도 노동·산안 담당 부서장 중 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주관·참여 지방관서 담당 부서장 (노사상생지원과장·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협의사항) ▲감독 위임 대상 사업장 검토·협의 및 선정, ▲지역 내 감독 정책 및 효율적 감독방안 수립, ▲지방관서-지방정부간 협업 (합동점검·교육 등) 방안 및 계획의 수립, ▲협업 우수사례 공유 등
- [소협의회]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권역별 협의회만으로는 합동 감독 및 컨설팅 등 협력 사업 수행 시 지역내 긴밀한 협의에 어려움
- 2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회(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세종 권역)는 하부조직으로 지역별 소협의회 필수 구성
- * 서울·경기 등 1:1 매칭 권역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소협의회 구성 가능(예: 서울 동부·서부 소협의회, 경기 북부·남부 소협의회 등)

< 지역별 소협의회 구성(안) >

권역	소협의회 구성		
	주관 지방노동관서 (시·도청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참여(지원) 지청
부산·경남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지청	경상남도	양산, 진주, 통영
대구·경북	대구청	대구광역시	대구청, 대구서부
	안동지청	경상북도	포항 구미 영주 안동
광주·전라· 제주	광주청	광주광역시	광주청
	전주지청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목포지청	전라남도	목포, 여수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충청· 세종	대전청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대전청
	청주지청	충청북도	청주, 충주
	보령지청	충청남도	천안, 보령, 서산

- (구성) (의장) 주관 지방관서 장*, (위원) 시·도 노동·산안 담당 팀장, 주관·참여 지방관서 담당 부서장(노사상생지원과장·노동기준감독과, (광역) 산재예방감독과장) * 소협의회 주관 관서가 지방청인 경우, 담당 부서장이 의장 가능
- (운영) 반기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협의사항) 지역별 합동점검 및 컨설팅 실행 방안, 그 외 협업 방안

□ (관서별 역할) (소)협의회 주관·참여 지방노동관서별 역할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주관 지방관서>

- ①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② 지방정부 위임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한 협의 등 업무
- ③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산업안전 역량 강화 방안 수립·시행
- ④ 권역별 노동부-자치단체 협력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⑤ 자치단체의 감독 업무 준비 및 시행에 대한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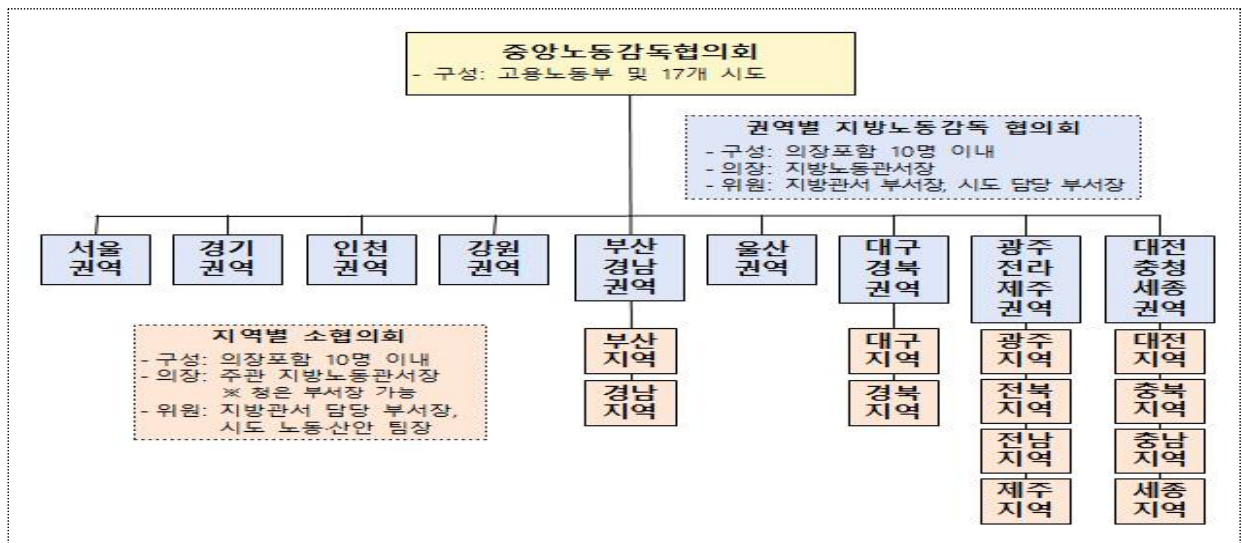
<「지역별 소협의회」 주관 지방관서>

- ① 지역별 소협의회 운영 및 협력 사업 계획 수립·운영
- ② 지방정부 위임 대상 사업장 선정 협의·지원 업무
- ③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산업안전 역량 강화 방안 실행
- ④ 자치단체의 감독 업무 준비 및 시행에 대한 지원 등

<그 외 지방관서>

- ① 지역내 노동부-자치단체 협력 사업의 실행
- ②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산업안전 역량 강화 방안 실행 등

< 노동감독협의체 구성·운영 체계도 >



②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규모·취약 분야 감독 강화

❖ 지역 내 소규모 취약 업종·분야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 (상반기) 자치단체는 취약 사업장 발굴 지원, 지방관서는 감독 실시

☞ (하반기) 지방정부 감독 준비를 위한 현장학습(참관)을 겸한 감독 추진

※ 산업안전 분야 중앙-지방 협업 감독 방안은 별도 자료로 시달 예정

□ (감독 시기) <상반기> '26.5월 ~ 6월, <하반기> 7월 ~ 11월

□ (대상 선정) 본부는 각 시·도별 임금체불 다수 발생 업종·분야 또는 지역 분석자료 등 감독 대상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예정

○ 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임금체불 다수 발생 업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 업종·분야 적극 제안* → 권역별 협의회에서 감독 대상 논의

* 감독 대상 사업장(취약 분야) 발굴은 자치단체에서 주도적 역할 필수(예시: 계절 근로자 사용 농가,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마을노무사·노동권익센터 제보사업장 등)

⇒ 자치단체가 요청·발굴한 분야 우선 감독하고, 체불 다수 발생 사업장, 외국인·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 선정

〈 감독 대상 소규모·취약 분야·업종(예시) 〉

대상	자치단체 강점 등	중점 점검 포인트
1. 식품·위생(음식점·카페·미용실) 및 소규모 유통업(편의점, 동네마트, 주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공중위생업 영업(휴폐업) 신고 및 허가 등 정보 연계 ▶ 상권 단위 집중 관리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연장·야간 수당 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축산·어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자 지침상 사업장별 인원배정 및 벌점 부과 권한, 근무지 등 정보 접근성 ▶ 취약숙소 시설 관리 권한 연계 가능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기초 근로조건 위반, 기숙사(숙소) 설치·운영 기준 위반, 추락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 등
3.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 자치단체의 설치·지도·감독 권한, 사업 현황 정보 접근성	▶ 휴일·휴게 및 근로시간, 연장 근로가산수당, 퇴직금 등
4. 산업·농공단지 내 제조·소공장(식품가공 등)	▶ 지역내 일자리 질 개선 효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업	▶ 산업안전과 합동 점검 등
5. 중·소규모 건설현장(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공사비 50억 미만)	▶ 건설 인허가 및 착공신고 정보, 주민 안전 관련성	▶ 기초 산업안전 사항(안전모·안전화 착용, 추락방지, 사다리·개구부 등 12대 기인물 안전 수칙 등), 임금체불
6. 입목 벌채 현장(지자체 허가 및 신고 대상)	▶ 자치단체의 입목 및 벌채 허가 및 신고 제도에 따른 정보 접근성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 벌목시 주요 준수 사항 등

- **(물량)** 1,500개소 시행(상반기 30% 이상 실시)
 - 협의회 주관 관서는 소속 지청의 감독관 정원 및 지역 특성 감안하여 관서별 물량을 계획에 포함(물량 중 최소 30%는 주관 관서가 담당)

- **(점검반)** 청(노사상생지원과)·지청(노동기준감독과)은 2인 1조로 점검반 편성
 - <상반기> 원칙적으로 노동감독은 지방관서 단독 수행, 자치단체에 인·허가권, 특사경* 등 권한 있는 분야는 합동 점검반 구성 가능
 - * 사업장 대형 화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소방 분야 협업 적극 모색

(참고)자치단체 인·허가 점검, 특사경 분야

- ◆ **(인·허가 점검 권한)**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무단 폐기물 투기, 대기·수질 오염 배출, 불법 처리업체,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약품 유통, ▲복지시설 인력 배치 기준, 시설장 자격, 운영규정 미비, 회계 기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가축전염병 예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
- ◆ **(특사경 분야)** 식품·위생, 폐기물·환경, 공중위생(미용·숙박)·보건, 농수산·축산, 개발·건축·토지, 소비자·상거래, 교통·자동차, 석유·에너지 등

- <하반기> 선도 자치단체 소관 지방관서는 점검반에 지방감독관(예정자) 필수 포함(참관)하여 현장학습(멘토링)을 겸한 감독* 실시
 - 그 외 관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단독 또는 합동점검 실시

- **(점검 방법)**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해 감독 1주일 전 통보
 - *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 필요한 경우 불시감독 가능
 - 부서장 주재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및 점검 취지, 내용 등을 숙지하고 감독 실시

- **(점검 내용)**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휴일, 임금체불(포괄임금 지침 위반, 퇴직금·가산수당 포함), 최저임금, 기숙사 등 점검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3~56조, 제60조, 제64~74조, ▲퇴직급여법 제9조·제17조·제20조·제23조의7, ▲기간제법 제17조,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8~100조

- **(점검 범위·조치 및 활용)**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감독 실시일 기준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제21조 및 별표3의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 금년 소규모 사업장 감독 결과를 통해 지역 노동실태 파악·분석 → '27년 본격 지방감독 시 대상 선정, 중점 감독사항 수립 등에 활용

3 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합동 컨설팅 내실화

❖ 취약 업종·분야의 최대한 다수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예방활동 전개

☞ 집단 컨설팅(1차) 결과, 범위반 다수 및 노무관리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他 사업 연계 등 사후조치(2차) 통해 예방 실효성 제고

□ (시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5~11월 중 실정에 맞게 수시 실시

□ (대상) 노무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관련 자치단체, 협·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

○ ①자치단체, 경총, 상공회의소 등이 既 실시 중인 주기적인 기업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 ②지역 내 주력·취약 업종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협회(지역 외식업중앙회 등) 등과 연계하여 실시

□ (물량) 3,000개소 시행

□ (컨설팅 절차·방법) 자치단체를 통해 분야·업종 발굴, 관련 협·단체, 노사민정협의회 등의 협조 등으로 컨설팅 대상 선정

① (사전 단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컨설팅 대상 선정 및 참석 요청

② (컨설팅 당일) 감독관이 주요 노동관계법 및 '컨설팅 자가진단표' 작성 요령 설명 후 사업주(인사 담당자) 진단표 작성 → 질의응답 실시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자료* 배포, 자가진단 결과 미준수 사항 다수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연계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 설명회 내용은 근로기준 외 산업안전, 자치단체 사업 등 구성 可

③ (사후 조치) 희망 사업장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실시

* 컨설팅 시 자율개선 사업 소개 및 참여 희망 파악 → 수행기관에 우선지원 요청

IV. 행정 사항

□ [소]협의회 개최 및 자체 추진계획 수립

-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및 지역별 「소협의회」 개최하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26년 협력 방안 논의

⇒ 논의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노동부-자치단체 협업 예시 】

- ①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중 자치단체에서 인·허가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분야 중 노무관리 취약 분야(▲ 숙박·음식업, ▲요양 병원, ▲건설 현장 등) 발굴
- ② 자치단체에서 농·축·수산업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현황(사업장 정보) 제공
- ③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노무사, 노동권익센터,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지원 사업 등 자치단체의 사업 시, 확인된 취약 분야(업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④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신고 등 제보 접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홍보 강화

- **(사업 홍보)** (소)협의회 주관 관서 중심으로 사업 추진 사전(협의회 개최 및 감독 및 컨설팅 개시), 사후(최종 성과 및 우수사례) 쉰 과정에 걸쳐 홍보
 - 특히, ①지방정부 감독 시행(12월)을 앞두고 노동부-지방정부 협력 본격화, ②이를 통해 지역내 사각지대(소규모 사업장) 해소 및 청년·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홍보 실시*

* 보도자료, SNS 게시, 기관장·기자 현장 동행,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업종지역내 확산)** 분야·업종별로 잘못된 관행·법 위반이 형성되지 않도록 감독 결과 주요 사례 등을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협·단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 통해 간담회·설명회 실시

□ 기타

- 동 사업 우수 관서(담당자)는 연말 표창, 우수사례 선정시 우대
 - * 연말 장관표창(중앙-지방 노동감독 협력 분야, 8점) 및 우수 감독관(격월) 포상 포함
- 기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지침」은 동 계획으로 대체
 - * 그 외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름

과제 내용	일정
1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설치·운영 및 자체계획 수립	
① 지역별 소협의회 구성 및 회의, 협업 방안 등 논의 - 지역별 취약 업종·분야 발굴 등 중점 감독·컨설팅 분야 논의	4월말
②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구성 및 회의, 협업 방안 등 논의 - 자체 추진계획(안) 의견수렴 및 협의 포함	4월말
③ 「권역별 기초노동질서 점검 자체 추진계획」 확정	5월초
④ 권역·지역별 홍보 실시(협의회 개최 및 자체 추진계획 수립 등) - 보도자료, SNS 게시, 기관장·기자 현장 동행, 현수막 등	5월초
2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규모·취약 분야 감독 강화	
① 상반기 점검 대상 확정	5월초
② 상반기 지역별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5월 ~ 6월
③ 상반기 권역·지역별 점검 성과 홍보(점검 및 조치결과 등)	7월
④ 하반기 점검 대상 확정	6월
⑤ 하반기 지역별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7월 ~ 11월
⑥ 하반기 권역·지역별 점검 성과 홍보(점검 및 조치결과 등)	12월
⑦ 지역 협·단체, 산업단지 등 간담회·설명회 - 분야·업종별 잘못된 관행·법 위반 다수 사례 등 감독결과 확산	11월 ~ 12월
3 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합동 컨설팅 내실화	
① 지역별 중점 업종·분야의 집단 컨설팅 참여 사업장 확정	5월~11월
② 중앙-지방 연계·합동 집단 컨설팅 실시	5월 ~ 11월
③ 컨설팅 성과 홍보 실시	연중